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실적 제출 및 경영평가 반영>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0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실적 제출 및 경영평가 반영(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24.

다.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실적 제출 및 경영평가 반영(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 <u>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u> - 공공기관은 청사 또는 회의·행사에 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 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u><신 설></u> -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	○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 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u>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 이행 실적</u> - 그 밖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

현행법 제48조제5항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대하여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등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러한 감축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는 2018년부터 일회용품 감축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침은 사실상의 권고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일회용품 사용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체계상 법률에는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원칙 및 일반사항(경영목표, 재무운용, 인사·고용, 고객만족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도 경영실적 평가에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조²⁾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데, 동법 제22조제2항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해당 법률에 의한 공공기

2)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7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관평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도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1회용품 감축 실적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친환경·탄소중립’ 항목을 경영실적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세부평가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이하 “1회용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현 행	개 정 안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

참고

친환경·탄소중립 지표(2025년도 편람 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친환경·탄소중립	지표정의	•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3) * 환경부, 산업부 평가결과 반영 ② 녹색제품 구매 실적(0.2)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
	지표정의	•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SOC,산업진흥·서비스)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1점 공기업(에너지)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 * 기관 자체의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의 비계량적 노력과 성과를 확인(기관의 주요사업에 포함된 친환경·탄소중립 사업은 이 지표의 평가대상이 아님)